

의안번호	제3097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4. 24.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97호
----------	--------

제출연월일: 2026. 4. 24.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운영 및 범죄예방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내용 보완(안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안전교육 내용에 ‘안전사고 및 폭행·성폭력 등 범죄예방’ 사항 규정

[복지지원과-12622(2026. 3. 19.)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563호

가) 예고기간: 2026. 3. 10.~2026. 3. 3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동판매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및 폭행·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수칙의 숙지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조(안전교육 등) ① <u>군수는</u> <u>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u> <u>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u> <u>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u> <u>전교육을 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u>제11조의2(편의시설) 군수는 이용</u> <u>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u> <u>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파크</u> <u>골프장 내에 설치·운영할 수</u> <u>있다.</u></p> <p>1. <u>자동판매기</u></p> <p>2.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편의시설</u></p> <p>제12조(안전교육 등) ① <u>군수는</u> <u>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및 폭</u> <u>행·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u> <u>이용수칙의 숙지와 안전한 체육</u> <u>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u> <u>교육을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11조의2

나. 비용발생 요인: 파크골프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자동판매기(음료, 커피 등) 구입 및 설치

다. 소요 예산: 8,000,000원×2대=16,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